

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2차 교육위원회)  
2020. 9. 9.(수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교육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발 의 자: 김영주 의원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0년 8월 26일
- 회부일자: 2020년 8월 28일

## 3. 제안이유

- 조례 제정 당시에는 충청북도 내 초등교사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으나, 현재는 우수한 초등교사 확보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더 이상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으며, 또한 「교육공무원법」 제33조의2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과 의무복무 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## 4. 주요내용

-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
-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의 복무의무 및 장학금 반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, 기존에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의 복무의무 및 장학금 반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게 하려는 것임.

- 본 조례는 2003년 조례 제정 당시 부족한 초등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07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제정하였던 조례임. 이후 당초 제정된 조례의 존속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초등교사 확보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010년도에 조례를 개정<sup>1)</sup>하고 장학금의 지급기한을 삭제하여 현재까지 조례가 유지하고 있는 것임.
- 본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 상황을 살펴보면, 2012학년도 신입생까지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후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였으며, 장학금을 지급받은 초등교사 중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교사는 현재 총 6명으로, 2020년도에 2명, 2021년도에 4명이 만료될 예정임.
- 아울러, 본 조례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 기준과 상위법령인 「교육공무원법」 제33조의2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 기준에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어,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소지도 있는 것으로 사료됨.

〈 조례와 상위법령 비교 〉

구분	장학금 지급 대상 규정
조례	<b>제2조(장학금 지급대상)</b>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자(이하 "장학생"이라 한다)는 청주교육대학교(이하 "청주교대"라 한다)에 입학한 학생 중, 졸업 후 충청북도립초등학교(이하 "초등학교"라 한다)에 근무할 것을 서약하고, <u>청주교대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정한다.</u>
교육공무원법 제33조의2	<b>제32조의2(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)</b> ① <u>교육감은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교육대학의 장에게 교육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.</u> ② <u>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교육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 ③ ~ ④ 생략

1) 당초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장학금의 지급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2012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였으나,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장학금 지급기한에 관한 부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되었음.

-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「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하고 기존에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의 복무의무 및 장학금 반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